특별과정운영규정 5-1-32

규정번호 5-1-32
제정일자 2016.10.26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평생교육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및 학칙 제23조(평생교육)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한다.

제2조(교육과정) 본 교육과정의 명칭은 명지전문대학 특별과정(이하 “특별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및 모집인원) ① 특별과정에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둔다.

② 특별과정의 설치 및 모집인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출석기반 학습과목 평가인정사항에 따른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평가인정사항에 따른다.

제5조(재학연한) 특별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특별과정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사무처장, 평생교육본부장, 과정별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27., 2025.3.31)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특별과정 내 각 교육과정의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설치과정 및 모집인원에 관한 사항

2. 설치과정의 운영 및 폐지
3. 수업운영 및 학사관리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기타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제4장 학기, 수업기간, 수업시수 및 휴업일

제9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제 또는 다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설치과정의 수업운영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한 학습과정별 평가인정사항에 근거하여 운영하되 수업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8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교육과정은 해당연도의 1학기의 성적으로 인정되고 익년도 2월 28일 이전에 종료되는 교육과정은 해당연도의 2학기 성적으로 귀속된다.

제10조(수업기간 및 시수) ① 수업기한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석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에 의한다.

② 수업시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한 표준교육과정표에 의한 교과목별 시수를 따른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3월 9일)
2. 일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12조(입학시기) 특별과정의 입학시기는 학기 개시일 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자격) 특별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입학전형 및 허가) ① 특별과정 학습과정을 수강 신청한 학습자 가운데 제1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입학원서와 지원 자격 증빙서류 확인자 기준 선착순 선발한다.

② 특별과정에 선발된 학습자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 등록의 절차를 마치면 담당부서에서는 개강일 기준 20% 이내에 설치과정, 교육운영기간 및 교·강사, 등록인원수와 등록인원의 인적사항 등을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한다.

제15조(학습비 및 등록) ① 특별과정에 설치된 교육과목에 대한 학습비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과목별 학점 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신청한 학점에 의하여 계산하며 총 수강신청 학점수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6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6조(교육과정의 이수구분) ① 특별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은 설치관련 학과 및 전공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전공, 교양,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7조(교육운영) ①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정 사항을 준수한다.

② 평가인정 변경시 그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③ 수업시간은 50분을 1교시로 정한다.

제18조(시험)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추가시험 등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19조(성적평가) ①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실습 및 실기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②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학습과정별 성적평가는 교육부고시「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Ⅳ. 시험 및 성적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20조(수료기준) 특별과정에 대한 수료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여 인가 받은 교육과목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수업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교과목의 성적이 D0(60점 이상)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21조(학점인정) 제21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습자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담당업무부서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고시「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1> (생략)

<12> 특별과정운영규정(5-1-3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②항의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한다.

<13> - <17> (생략)